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적용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511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위생용품 압류·폐기 및 영업소 폐쇄를 위한 영업표지물의 제거 등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적용 명시	3

I. 개요

1.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51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8. 29.

(3) 회 부 일 : 2025. 9.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 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위생용품의 압류, 폐기처분 및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제7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위생용품 압류·폐기 및 영업소 폐쇄를 위한 영업표지물의 제거 등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적용 명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생용품 압류·폐기 및 영업소 폐쇄를 위한 영업표지물의 제거 등 행정상 강제조치를 하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 시행일: 공포한 날

현행	개정안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u>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u>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6조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조제1항·제2항¹⁾ 또는 제8조제1항²⁾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소분 또는 위생처리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① 제10조제4항³⁾을 위반한 경우와 제12조의2⁴⁾를 위반한 경우 또는 ②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1)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영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①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기준 및 규격) ④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위생용품과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생용품 관리법」

제12조의2(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저장·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소분 또는 위생처리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1의2.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

2.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또한, 현행법 제19조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자가 제17조제1항6)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 이처럼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신체나 재산 등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조치를 ‘행정상 강제’라고 하는데,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8)에

6)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12. (생략)

7) 「위생용품 관리법」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8)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서는 행정상 강제 유형으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 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 제16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그리고 제19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각각 「행정기본법」 제32조(직접강제) 또는 제33조(즉시강제)에 따르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의무자에게 직접강제의 경우 계고(戒告) 및 통지 절차(제32조 제3항)가, 즉시강제의 경우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도록 한 절차(제33조제2항 및 제3항)등이 각각 적용됨을 미리 알려주어 처분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무이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보임.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②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② (생략)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도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

□ 다만, 「행정기본법」 제5조제1항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⁹⁾,

9)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 체계상으로도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 그리고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므로 법률에 별도의 근거를 두어 명시할 실익은 높지 않다고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의 폐기처분 및 영업소 폐쇄 조치 시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493